

이사회비 관리 내규

2025.5.30.개정

제 1조(목적) 본 내규는 이사의 회비(이하 "이사회비"라 한다)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이사의 정의) 이사란 본회가 정한 이사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를 말한다.

제 3조(이사의 자격 및 의무)(2025.5.30).

- ① 이사의 자격은 예수대학교 동문회 정회원(학부졸업자 또는 대학원 수료이상자)으로서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② 이사는 동문회 회칙 제29조의 1에 따라 동문회 및 모교의 발전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4조(특별회비의 부담금) 이사로 하더라도 본회가 정하는 특별회비의 부담금에 대하여는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

제 5조(이사회비) 이사회비는 본 회비의 25배를 합한 금액(50만원)으로 정한다.

제6조(이사회비의 사용 및 관리) 이사회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 및 관리한다(2025.5.30).

1. 이사회비는 모교지원사업으로 사용한다. 단, 이사회 소집 등 특별한 경우를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하여 경상비로 전출할 수 있다.
2. 이사회비는 본회가 일괄 관리한다.
3. 이사회비는 경상비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한다.
4. 이사회비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에 예치한다.

부 칙

본 규약은 202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본 내규는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예수대학교 동문회 특별기금 관리 내규

2025.5.30. 개정

제 1조(목적) 동문회 특별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기금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.

제 2조(기금구성) 동문회 특별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조성한다.

1. 회원의 특별회비
2. 기타

제 3조(기금의 사용)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한다.

제 4조(기금의 관리) 본 기금은 제 2회계가 관리한다.

제 5조(보관 장부) 본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보관한다.

1. 본 내규
2. 현금 출납부
3. 특별기금 및 찬조금 대장
4. 예금통장

부 칙

본 시행세칙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본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본 내규는 2025년 5월30일부터 시행한다.

평생회비 관리 내규

2025.5.30. 개정

제 1조(목적) 본 내규는 평생회원의 회비(이하 "평생회비"라 한다)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평생회원의 정의) 평생회원이란 본회가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를 말한다.

제 3조(평생회원의 자격) 평생회원의 자격은 동문회 정회원(학부졸업자 또는 대학원 수료이상자)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제 4조(특별회비의 부담금) 평생회원이라 하더라도 본회가 정하는 특별회비의 부담금에 대하여는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

제 5조(평생회비) 평생회비는 본 회비의 15배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제 6조(평생회비의 사용 및 관리) 평생회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 및 관리한다
(2025.5.30).

1. 평생회비는 동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. 단, 매년 수입의 25%는 경상비로 전출한다(2025.5.30).
2. 평생회비는 본회가 일괄 관리한다(2025.5.30).
3. 평생회비는 경상비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된다.
4. 평생회비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에 예치한다(2025.5.30).

부 칙

본 규약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약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약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약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본 내규는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